

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학술교류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양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, 양 기관의 정보 교류와 학술 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정은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(이하 ‘양 기관’ 이라 한다)의 학술·연구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공동 연구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·학술대회 개최
2.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공동 개발·운영
3.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
4. 상대기관에 대한 자문요청
5. 기타 상호협력에 필요한 협조

제4조(비밀엄수)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협정기간)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6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이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정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효력발생) 양 기관은 협정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협정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정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5년 12월 18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총 장 김 경 성

김 경 성



한국교육개발원
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

원 장 백 순 근

백 순 근